

政治關係法改正意見

(選舉・政治資金・政黨)

2001. 5. 30

中央選舉管理委員會

차례

I. 提出背景	1
II. 作成方向	2
III. 改正意見 主要內容	5

I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

地域緣故 등을 이용하는 選舉風土 刷新

1. 地域別 支持度 및 出身地域別 人口分布率 公表 제한 / 5
2. 出身緣故를 摘示한 選舉運動의 제한 / 6
3. 特定地域을 위한 事業公約의 公表 제한 / 6
4. 地域主義 選舉風土 배격을 위한 雾圍氣 확산 / 7

選舉運動方法 및 制限 · 禁止의 合理的 調整

1. 立候補豫定者의 支持基盤 培養行爲 허용 / 7
2. 選舉事務關係者の 選舉運動方法 다양화 / 9
3. 再 · 補闕選舉시 候補者の 懸垂幕게시 허용 / 9

4. 再·補選選舉에서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의 제한 / 9
5. 議政活動報告 時期·方法의 조정 / 10
6. 黨員集會·敎育 開催時期의 조정 등 / 10
7. 團體의 選舉運動의 제한적 허용 / 11
8. 輿論調查結果 公表의 制限期間 단축 등 / 11

公務員 등의 選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강화

1. 地方自治團體長의 職務를 이용한 選舉關與行爲 遮斷 / 12
2. 選舉가 임박한 시기의 政府業績 弘報·誹謗 제한 / 13

政見·政策으로 경쟁하는 選舉風土 조성

1. 放送媒體를 통한 政黨의 政策討論 활성화 / 13
2. 合同演說會를 合同討論會로 전환 / 14

有權者의 바른 選擇과 投票便宜를 위한 제도보완

1. 候補者 選舉關聯情報의 公開範圍 확대 / 15
2. 障碍人의 投票便宜를 위한 제도보완 / 15
3. 再·補選選舉의 投票時間 延長 / 16

選舉費用制限의 實效性 확보

1. 選舉關聯費用의 公開制度 導入 / 17
2. 選舉費用 收入 · 支出의 透明性 保障裝置 강화 / 17
3. 選舉費用 범위의 明確化 / 18

選舉犯罪에 대한 效率的인 規制

1. 選舉犯罪 調查 및 制裁의 實效성 확보 / 19
2. 選舉에 있어 私組織의 規制基準 具體化 / 23

選舉節次 등의 改善

1. 地方自治團體長의 當選人 決定方法 개선 / 25
2. 地方議員選舉 候補者의 選舉權者 推薦 數 하향조정 / 25
3. 投 · 開票事務員의 委囑範圍 확대 / 25
4. 當選證 授與節次의 개선 / 25

代案 : 地方議會議員選舉區制 改善 / 26

② 政治資金에 관한法律 27

1. 政治資金의 安定的 · 均衡的 調達 / 27
2. 政治資金 收入 · 支出에 대한 透明性 確保 / 29
3. 公職選舉 立候補豫定者의 選舉關聯費用 募金許容 / 31
4. 國庫補助金 및 會計報告 改善 / 31
5. 法의 實效性 確保를 위한 罰則規定 신설 / 33

③ 政黨法 34

1. 黨內 意思決定의 民主化 / 34
2. 政黨의 政策推進內容 公開 / 36
3. 政黨構造의 改善 및 黨員資格 範圍擴大 / 36

I . 提 出 背 景

- 내년도에 실시되는 제3회 全國同時地方選舉와 제16대 大統領選舉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이어서 실시될 뿐만 아니라 4個 地方選舉는 많은 數의 候補者와 選舉事務關係者가 동시에 참여하고 잇따라 실시되는 大統領選舉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過熱・混濁이 우려되며, 특히 地域間 葛藤으로 인한 政黨支持度의 地域偏重 現象이深化되어 有權者 意思의 심각한 歪曲은 물론 經濟의 어려움이 가중될 소지마저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내년의 兩大選舉를 깨끗하고 公正하게 치르기 위하여는 地域主義에 의존하는 選舉風土를 刷新하여 地域偏重現象을 완화하고 政黨・候補者가 選舉法을 遵守하면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選舉가 구현되도록 하며, 民主的인 節次에 따라 政黨이 選舉에 참여하고 選舉關聯費用 등 政治資金의 透明性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關聯制度의 개선이 긴요하다 할 것임.
- 이에 우리위원회는 選舉・政治資金・政黨事務에 관한 관리경험을 바탕으로 各界의 의견을 수렴하여 關聯制度에 대한 改善方案을 마련하고, 내년도의 選舉日程을 감안하여 가급적 早速한 시일 내에 立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政治關係法 改正意見을 國會에 제출하는 것임.

II. 作 成 方 向

1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

代議制民主主義 하에서 選舉制度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目標는 選舉의 自由와 公正이 調和를 이루고 有權者의 意思가 올바르게 選舉結果에 反映되도록 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選舉制度는

첫째, 地域情緒를 부추기는 選舉運動으로 有權者의 진정한 의사를歪曲하고 지역간 葛藤과 分裂을 助長하는 選舉行態를 根絕하여民意가 정확히 반영되고 國民統合에 기여하는 選舉가 구현되도록하고,

둘째, 選舉運動方法과 制限 · 禁止事項의合理的調整을 통하여 선거운동기회를 확대하면서 選舉의 過熱을 防止할 수 있는方案을 장구하고 政治新人이 選舉運動期間전에 자신을 알릴수 있는 기회를 部分的으로 허용하며,

셋째, 選舉犯罪에 대한 制裁를 강화하여 選舉法의 實效性을 확보하고

넷째, 選舉關聯費用의 公開를 통한 選舉費用의 透明性 제고, 再 · 补選選舉의 過熱 防止方案 등 그 동안의 選舉管理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의 보완 등에 重點을 두어 개선하고자하였으며,

地方議會議員選舉區制는 地方議員 定數縮小와 有給制가 도입되는 경우 현행 小選舉區制度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選舉의 過熱을 防止하고 小地域對決 현상을 완화하며 死票를 줄일 수 있도록

- 市·道議員選舉區制는 自治區·市·郡單位의 中選舉區制로
- 自治區·市·郡議員選舉區制는 自治區·市·郡單位의 大選舉區制로

하는 방안을 代案으로 제시하였음.

② 政治資金에 關한 法律

政治資金制度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감안한 적정한 규모의 政治資金 調達과 收入·支出의 透明性을 확보하는데 重點을 두고 첫째, 政治資金의 安定的이고 均衡的인 調達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法人稅를 납부하는 企業에 대하여 政治資金 寄託義務를 부여하되 현실적으로 企業의 二重的 負擔이 解消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政治資金은 특히 選舉와 관련하여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 公職選舉의 立候補豫定者는 選舉에 소요되는 政治資金을

募金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政治活動費用의 公開를 통하여
選舉關聯 政治活動費用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셋째, 기타 國庫補助金의 支出에 대한 統制強化, 政治資金관련
會計報告制度의 改善 등 政治資金 사무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③ 政黨法

政黨制度는 政黨의 民主的 운영과 低費用 高效率의 内부구조를
갖추도록 하는데 重點을 두고
公職選舉候補者 推薦에 있어 黨員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國會議員選舉區를 중심으로 하는 地區黨 조직과 高費用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邑·面·洞黨連絡所의 組織構造를 개선하고자
하였음.

III. 改正意見 主要內容

①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

地域緣故 등을 이용하는 選舉風土 刷新

1. 地域別 支持度 및 出身地域別 人口分布率 公表 제한

- 選舉에 있어 누구든지 政黨이나 候補者의 支持度나 當選人을 예상하게 하는 輿論調查結果를 公表 또는 報道하는 경우 選舉日전 120日부터는 政黨이나 候補者의 支持度를 選舉區民의 居住地域 · 出身地域의 市 · 道別(2이상 市 · 道의 圈域別 포함) 또는 氏族別로 구분하여 公表하거나 報道할 수 없도록 함.
- 누구든지 選舉日전 120日부터 選舉日까지는 당해 選舉와 관련하여 放送 · 通信(컴퓨터통신망 포함) · 新聞 · 雜誌 · 宣傳文書 기타의 刊行物을 이용하여 出身地域別 選舉區民의 數나 그 分布率을 公表하거나 報道할 수 없도록 함.

2. 出身緣故를 摘示한 選舉運動의 제한

- 누구든지 演說 · 放送 · 新聞 · 通信(컴퓨터통신망 포함) · 宣傳文書 기타의 弘報物을 이용하여 候補者나 그 家族 또는 政黨代表者の 地域緣故(原籍地 · 本籍地 · 出生地 · 居住地에 관한 사항을 말함)
 - 出身學校나 氏族에 관한 사항을 摘示하거나 選舉區民의 地域緣故 · 出身學校 또는 氏族에 관한 사항을 이용하여 政黨 · 候補者에 대한 支持 · 反對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 政黨 또는 候補者は 宣傳壁報 · 選舉公報 · 小型印刷物 · 經歷放送原稿 등 법정선거홍보물에 候補者나 그 家族 또는 政黨代表者の 原籍地 · 本籍地 · 出生地 · 居住地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되, 出身學校名에 포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함.

3. 特定地域을 위한 事業公約의 公表 제한

政黨 · 候補者 또는 選舉事務長 등 選舉運動關係者は 所屬政黨의 政綱 · 정책 또는 公約으로 公表된 사항 외에 選舉區안의 극히 한정된 地域의 選舉區民 또는 그 選舉區民과 관계있는 機關 · 團體 · 施設에 직접적인 利害關係가 있는 사업의 公約을 公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公表하는 것은 買收 및 利害誘導行爲로 보도록 함.

4. 地域主義 選舉風土 배격을 위한 雾圍氣 확산

- 言論機關은 候補者의 出身緣故에 관한 사항을 浮刻시켜 報道할 수 없도록 선언적 규정을 두도록 하며,
- 放送·新聞·通信·雜誌 기타의 刊行物을 경영·관리하는者は 選舉法상의 對談·討論會나 放送演說을 放送·報道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의 진행 前·後에 選舉管理委員會가 제공하는 地域主義 選舉風土를 배격하는 내용 등의 弘報放送을 실시하도록 함.

選舉運動方法 및 制限·禁止의 合理的 調整

1. 立候補豫定者の 支持基盤 培養行爲 허용

選舉運動期間전에도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로 選舉管理委員會에 申告한 자는 本人에 한하여 選舉日전 120日(大統領選舉는 選舉日전 1年, 地方議員選舉는 選舉日전 60日)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選舉와 관련된 모든 政治活動費用의 收入·支出 내역을 報告하도록 함.

가. 經歷 등이 게재된 名唧 手交行爲

자신의 姓名 · 사진 · 學歷 · 經歷 · 住所 · 電話番號가 게재된 5cm×9cm이내의 名唧을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제출한 후 選舉區民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手交할 수 있도록 함.

나. 컴퓨터통신망에 立候補豫定者 情報 揭示 · 電送

자신名義의 인터넷홈페이지에 政見 · 정책 등을 알리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對話房 · 討論室 등을 통하여 選舉區民과 意思交換을 할 수 있도록 하며, 電子郵便주소가 파악된 選舉區民에게 電子郵便을 送信할 수 있도록 함.

다. 電話を 이용한 立候補 意思表示

電話(컴퓨터를 이용한 自動送信裝置를 설치한 電話 제외)를 이용하여 政見 · 정책 · 公約의 說明 및 立候補 意思表示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選舉準備를 위한 事務所의 看板揭示

立候補準備 또는 選舉運動準備를 위하여 事務所(1個所에 한함)를 設置한 때에는 일정한 규격이내의 看板을 事務所 건물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2. 選舉事務關係者의 選舉運動方法 다양화

- 公開場所에서의 演說 · 對談用 자동차가 移動하는 중에도 擴聲裝置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驚音防止를 위하여 擴聲裝置의 용량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사용하도록 함.
- 政黨 · 候補者 · 選舉事務長 등이 選舉期間중 宣傳壁報 등 법정선거홍보물을 貼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數量을 選舉別로 현행의 2倍로 늘이도록 함.
- 選舉事務關係者[第68條(標札 · 手旗等)第2項의 主體를 말함]는 身分證을 佩用하고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거리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함.

3. 再 · 補闕選舉시 候補者の 懸垂幕게시 허용

再 · 補闕選舉에 限하여 懸垂幕에 의한 選舉運動을 할 수 있도록 함.

4. 再 · 補闕選舉에서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의 제한

再 · 補闕選舉에 있어 당해 選舉의 選舉人이 아닌 者(候補者的家族은 제외)는 누구든지 選舉事務長 · 選舉連絡所長 · 選舉事務員

또는 會計責任者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政黨 · 候補者 등에 의한 演說會 및 公開場所에서의 演說 · 對談의 演說員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舉運動을 할 수 없도록 함.

5. 議政活動報告 時期 · 方法의 조정

議政活動報告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의 選舉日전 1年부터는 그 方法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도록 하고, 議政活動報告의 금지기간은 選舉期間開始日전 30日부터 選舉日까지로 확대하도록 함.

- 議政報告書 제작 · 배부 : 분기별로 1種 1회
- 議政報告會 개최 : 분기별로 邑 · 面 · 洞 수에 상당하는 回數이내

6. 黨員集會 · 教育 開催時期의 조정 등

- 黨員集會 및 黨員教育의 開催制限期間은 選舉期間開始日전 30日까지로 확대하도록 하고, 寄附行爲制限期間중에 開催하는 黨員集會 및 黨員教育에 참석하는 所屬黨員은 반드시 黨員證을 佩用하도록 함.
- 많은 돈이 소요되는 政黨集會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創黨大會 등에 참석할 수 있는 所屬黨員은 政黨法 및 당해 政黨의 黨憲 · 黨規에서 정한 議決權이 있는 者(代議員 등)만으로 限定하도록 함.

7. 團體의 選舉運動의 제한적 허용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團體는 選舉運動期間중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反對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往來하는 公개된 場所가 아닌 場所에서 소속 構成員만이 참석하는 集會를 開催할 수 있도록 하고,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反對하는 내용을 게재한 團體의 機關紙 또는 소식지를 1種 1回 이내에서 發行하여 소속 構成員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配付할 수 있도록 함.

8. 輿論調查結果 公表의 制限期間 단축 등

- 輿論調查結果의 公表 금지기간을 不在者投票가 개시되는 選舉日전 7日부터 選舉日까지로 短縮하고
- 言論機關의 投票所 出口調查는 현행 投票所로부터 300미터 밖의 距離制限을 폐지하되, 投票의 秘密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投票所의 秩序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公務員 등의 選舉에 영향을 미치는 行爲 제한강화

1. 地方自治團體長의 職務를 이용한 選舉關與行爲 遮斷

가. 市·道 및 自治區·市·郡政報告會 폐지

住民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事業의 시행을 위하여開催하는事業說明會 외에 市·道 및 自治區·市·郡政報告會는 開催할 수 없도록 하고, 地方自治團體長의 公約實踐狀況 등 團體長 개인을 宣傳하는 사항은 自治團體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도록 함.

나. 邑·面·洞 機能轉換에 따른 住民自治委員會의 活動制限 등

- 選舉期間중에는 住民自治委員會의 모임 또는 會議를 開催할 수 없도록 하고, 住民自治委員會의 委員은 그 職을 가지고 選舉運動을 할 수 없도록 함.
- 住民自治센터의 無料敎養講座 등은 選舉時期에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되, 選舉期間開始日전 30日부터 選舉日까지는 地方自治團體가 開催·後援할 수 있는 敎養講座라 하더라도 그 期間중에 새로이 講座를 개설하거나 住民自治센

터의 教養講座를 종전부터 실시하던 場所나 施設이 아닌 곳에서 개최할 수 없도록 함.

-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選舉期間開始日전 30日부터 選舉日까지 住民自治센터에서 개최하는 教養講座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함.

2. 選舉가 임박한 시기의 政府業績 弘報 · 謗謗 제한

누구든지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가 있는 해의 選舉日전 30日부터 選舉日까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舉法에 規定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政府의 業績을 弘報하거나 謗謗하는 廣告를 할 수 없도록 하고, 政府의 業績을 弘報 또는 批判하는 내용을 게재한 弘報物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發行 · 配付할 수 없도록 함.

政見 · 政策으로 경쟁하는 選舉風土 조성

1. 放送媒體를 통한 政黨의 政策討論 활성화

- 公營放送社(韓國放送公社와 放送文化振興會法에 의한 放送文化振興會가 出資한 放送法人)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에 있

어 選舉日전 60日부터 選舉期間開始日전일까지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의 代表者 또는 그가 지명하는 者를 초청하여 政黨의 政綱·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對談·討論會를 2回이상 開催·報道하도록 함.

- 言論機關이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選舉日전 120日부터, 國會議員選舉 또는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選舉日전 60日부터 할 수 있는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 초청 對談·討論會의 개최기간을 폐지하여 言論機關이 取材·報道의 일환으로 時期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開催할 수 있도록 함.

2. 合同演說會를 合同討論會로 전환

- 候補者の 政見·정책에 대한 有權者の 比較·評價가 容易하도록 地域區國會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舉의 合同演說會는 合同討論會로 전환하고, 地方議員選舉의 合同演說會는 폐지하도록 함.
-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政黨의 黨員이 아닌 中立的이며 學識과 德望이 있는 7人이내의 委員으로 合同討論委員會를 구성하여 合同討論會를 主管하도록 함.

有權者의 바른 選擇과 投票便宜를 위한 제도보완

1. 候補者 選舉關聯情報의 公開範圍 확대

有權者가 候補者의 資質을 검증하는데 도움을 주어 올바르게 候補者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候補者 選舉關聯情報 公開制度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도록 함.

- 前科事實은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가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 전 30日부터 關係機關에 照會하여 回報받은 禁錮이상의 刑(選舉犯의 경우는 罰金刑 포함)의 犯罪經歷에 관한 書類를 候補者登錄을 申請하는 때에 제출하도록 하고
- 稅金納付實績은 최근 3年間의 所得稅 및 財產稅외에 綜合土地稅를 추가하여 納付實績證明書(完納 또는 滯納事實을 증명하는 書類 포함)를 제출하도록 하며
- 財產事項은 이미 公開된 현직 公職者의 경우에도 다른 候補者와 같은 방법으로 財產申告書를 제출받아 공개하도록 함.

2. 障碍人の 投票便宜를 위한 제도보완

- 거동이 불편한 障碍人은 居所投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區・市・邑・面의 長은 障碍人福祉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障碍人

中 居所投票對象者를 조사하여 본인에게 不在者申告書를 동봉하여 통지하도록 하며, 障碍等級 또는 障碍種類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統·里·班長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不在者申告를 할 수 있도록 함.

- 區·市·邑·面의 長은 등록된 障碍人 중 居所投票對象 障碍人의 名單을 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 전 5日까지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통보하도록 함.
- 關係機關에 등록된 障碍人福祉施設 중 居所投票不在者申告를 한 精神遲滯障碍人을 수용하고 있는 施設의 長은 그 施設 안에 居所投票를 위한 記票所를 반드시 設置하도록 하고, 그 수용인원이 30人以上인 경우에는 不在者投票期間중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그 委員 또는 당해 施設의 소재지를 管轄하는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 委員으로 하여금 投票狀況을 參觀할 수 있도록 함.

3. 再·補闕選舉의 投票時間 延長

再·補闕選舉에 있어서는 직장인들이 근무시간후에도 投票할 수 있도록 투표마감시각을 午後 8時까지로 하여 현행보다 2時間 延長하도록 함.

選舉費用制限의 實效性 확보

1. 選舉關聯費用의 公開制度 導入

選舉와 관련된 費用의 총지출규모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候補者는 選舉日전 120日(大統領選舉는 選舉日전 1年, 地方議員選舉는 選舉日전 60日)이 속하는 달의 初日부터 選舉日까지 支出한 다음의 費用을 選舉日후 20日까지 마감하여 第132條에 의한 選舉費用 收入·支出報告書와 구분하여 選舉日후 30日(大統領選舉 및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選舉日후 40日)까지 管轄選舉區管理委員會에 選舉關聯費用의 收入과 支出報告書를 제출하도록 하며, 당해 選舉管理委員會는 이를 공개하도록 함.

- 議政活動報告費用등 政治活動에 소요된 費用
- 立候補와 選舉運動을 위한 準備에 소요되는 費用(政黨推薦候補者는 所屬政黨의 推薦을 얻기 위한 活動에 소요된 費用 포함)
- 選舉期間전 名唧手交 등 支持基盤 培養에 소요된 費用
- 法定選舉費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選舉關聯費用
- 기타 選舉와 관련한 政治活動에 소요된 費用

2. 選舉費用 收入·支出의 透明性 保障裝置 강화

가.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의 金融計座 開設 의무화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로 選舉管理委員會에 申告한 者는 議政活動 등 개인적 政治活動費用, 支持基盤 培養에 소요된 費用,

立候補 및 選舉運動準備에 소요되는 費用등을 收入·支出할 1個의 金融計座를 개설하여 選舉管理委員會에 신고하고, 그 計座만을 통하여 收入·支出하도록 함.

나. 選舉費用 支出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選舉費用 支出의 透明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支出金額이 50萬원 이상(分割하여 支給할 때에는 총액을 말함)인 때에는 激勵金 등 社會常規上 현금으로 支給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計座入金의 방법으로 支出하도록 함.

3. 選舉費用 범위의 明確化

選舉費用의 범위를 明確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費用은 選舉費用에 포함하도록 함.

- 政黨,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 포함), 候補者의 家族, 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 또는 會計責任者가 選舉運動(寄附行爲制限規定違反 포함)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
- 당해 選舉에 있어서 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 또는 會計責任者가 선임·신고되기 전에 選舉運動(寄附行爲制限規定違反 포함)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

選舉犯罪에 대한 效率的인 規制

1. 選舉犯罪 調查 및 制裁의 實效性 확보

가. 選舉法 違反行爲者의 違反事實 등 公表

- 各級選舉管理委員會가 選舉日 전일까지 選舉犯罪의 嫌疑로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 포함), 候補者的 家族, 選舉事務長, 選舉連絡所長, 會計責任者, 選舉事務員, 政黨의 黨職者 등을 選舉犯罪의 嫌疑로 告發한 때에는 違反者의 人事項과 犯罪嫌疑事實을 당해 選舉管理委員會가 公表하도록 하되,
- 違反行爲者는 告發事實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24時間이내에 異議提起 할 수 있도록 하고, 異議提起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함께 公表하도록 하며
- 大統領選舉 · 國會議員選舉 또는 地方自治團體長選舉에 있어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 포함)와 選舉事務長을 告發하고 이를 公表한 때에는 異議提起事項을 포함하여 당해 選舉區를 주된 配付地域으로 하는 日刊新聞에 廣告하도록 함.

나. 選舉不正監視團의 運營體系 改善

- 選舉期間中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만 두던 選舉不正監視團을 寄附行爲制限期間開始日부터 選舉日까지 市・道 및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두도록 하되,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의 選舉不正監視團員 委囑은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
 - 寄附行爲制限期間開始日부터 選舉期間開始日전 61日까지 : 20人이내
 - 選舉期間開始日전 60日부터 選舉期間開始日전일까지 :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 推薦하는 각 2人을 포함한 30人이내
 - 選舉期間開始日부터 選舉日까지 : 당해 選舉區에 候補者를 推薦한 政黨과 無所屬候補者 (市・道議員選舉의 無所屬候補者와 自治區・市・郡議員選舉 候補者 제외)가 推薦하는 각 2人을 포함한 50人이내
-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 委員과 法令에 의하여 政治活動이 금지된 團體중 常勤 任・職員을 제외한 구성원은 選舉不正監視團員이 될 수 있도록 하며, 選舉不正監視團員은 당해 選舉의 選舉期間開始日부터 그 身分의 終了시까지 選舉事務長 등에 準하여 身分을 보장하도록 함.

다. 選舉日후 金品관련 犯罪의 公訴時效 延長 등 處罰強化

- 選舉日후에 이루어진 選舉運動의 대가수수나 答禮行爲에 대한 公訴時效를 그 行爲時부터 6月까지로 延長하도록 하고
- 法人 기타 團體의 代表者나 構成員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選舉 犯罪를 犯한 때에는 行爲者외에 法人 기타 團體에 대하여도 해당 各條의 罰金刑으로 처벌하도록 하며
- 選舉法違反行爲에 대한 選舉管理委員會의 書面에 의한 警告 또는 中止 · 是正命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過怠料를 賦課하도록 함.

라. 選舉事務長등의 選舉犯罪에 따른 當選無效 확대

- 選舉管理委員會에 會計責任者로 선임 ·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選舉費用制限額의 3分의 1이상을 支出한 者가 第265條에 規定된 選舉犯罪로 인하여 懲役刑의宣告를 받은 때와 會計責任者가 選舉費用 收入 · 支出報告書 또는 領收證 기타 證憑書類를 虛偽로 기재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宣告를 받은 때에는 당해 候補者(大統領選舉,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比例代表市 · 道議員選舉 제외)의 當選을 無效로 하도록 함.
- 選舉事務長 · 選舉事務所의 會計責任者로 선임 · 신고되기 前에 당해 候補者를 위한 第265條의 當選無效 該當犯罪를 犯하여 懲

役刑을 宣告받은 경우에도 당해 當選人の 當選을 無效로 하도록 함.

마. 選舉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시 寄託金 還收 등

- 選舉犯罪로 인하여 候補者の 當選이 無效로 된 경우에는 당해 候補者에게 반환된 寄託金을 還收하도록 하고, 寄託金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되는 候補者の 경우에는 寄託金에서 공제하는 過怠料 및 代執行費用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 候補者, 選舉事務長, 會計責任者가 당해 選舉와 관련하여 그 신분취득전의 選舉犯罪로 有罪判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選舉費用의 補填을 제한하도록 함.

바. 選舉犯罪관련 資料提出要求 범위 확대

- 選舉犯罪의 嫌疑가 있는 宣傳物 기타 郵便物이 郵送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發送者的 성명 · 주소, 발송통수, 발송지역 등 選舉犯罪 調查에 必要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郵遞局長은 郵便法 등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에 응하도록 함.
- 電話를 이용한 選舉犯罪의 嫌疑가 있거나 選舉費用의 調査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電話加入者の 성명 · 주소 · 住民登錄番號, 設置場所 · 臺數 · 期間 및 使用料金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關係機關의 長은 電氣通信事業法 등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에 응하도록 함.

사. 内部告發者の 보호

第263條 내지 第265條에 의하여 當選無效가 될 수 있는 犯罪事實을 신고(告訴 · 告發 포함)한 者에 대하여는 犯罪에 가담하였더라도 그 刑을 免除하고, 所屬 機關 · 團體는 申告者에게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며, 搜查 또는 裁判上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없이 身元을 公開할 수 없도록 함.

아. 選舉犯罪 申告 · 提報者 褒賞制 도입

選舉管理委員會에 選舉犯罪를 申告하여 告發 · 搜查依賴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도록 한 者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의 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選舉에 있어 私組織의 規制基準 具體化

가. 不法私組織에 대한 規制範圍 明確化

政黨이나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 포함)를 위한 私組織을 根絕하기 위하여 設立 · 設置가 금지되거나 운영이 제한되는 私組織 기타 團體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도록 함.

第114條第2項第1號 및 第2號의 要件에 해당하는 同友會 · 山岳會 등 組織 · 團體로서,

- 選舉區民을 構成員으로 하여 그 組織의 目的과 活動範圍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支部 · 支會 등과 같은 下位組織을 구성하는 경우
- 그 활동과 관련하여 候補者에 대한 支持 · 反對의 意思表示를 하거나 明示的인 意思表示 없이 支持 · 宣傳에 이르는 경우
- 그 명칭에 특정 候補者의 名義를 사용하거나 그 名義를 推定 할 수 있는 文字 · 圖畫 · 象徵物 등을 사용하는 경우

나. 選舉對策機構 構成範圍의 具體化

政黨은 選舉期間開始日전 30日부터 選舉日까지는 당해 政黨의 黨憲 · 黨規에 의하여 설치되는 政黨의 内部的 機構와 選舉對策 機構외에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選舉와 관련 있는 組織 · 機構 등을 設置할 수 없도록 하고, 地區黨 및 區 · 市 · 郡黨連絡所에 두는 選舉對策機構의 構成員數는 管轄區域안의 邑 · 面 · 洞 數에 상당하는 數이내로 하도록 함.

選舉節次 등의 改善

1. 地方自治團體長의 當選人 決定方法 개선

候補者登錄마감시각에 候補者가 1人이거나 候補者登錄 마감후 選舉日 投票開始時刻전까지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되어 候補者 數가 1人이 된 때에는 投票를 實시하지 아니하고, 選舉日에 그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하는 등 地域區國會議員選舉와 유사한 방법으로 當選人을 決定하도록 함.

2. 地方議員選舉 候補者의 選舉權者 推薦 數 하향조정

自治區·市·郡議員選舉의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현행 50人이상 100人이하에서 5人이상 10人이하, 地域區市·道議員選舉의 無所屬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현행 100人이상 200人이하에서 10人이상 20人이하의 選舉權者 推薦을 받도록 함.

3. 投·開票事務員의 委囑範圍 확대

敎職員 등 投·開票事務從事者の 과중한 業務負擔과 人力不足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別定職·雇傭職·契約職公務員, 政府投資 機關, 農·畜·人蔴協, 水協, 山林組合 및 金融機關 등의 職員 등을 投·開票事務員으로 委囑할 수 있도록 함.

4. 當選證 授與節次의 개선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當選人에게 當選證을 授與함에 있어서는 各界各層의 代表者が 參與한 가운데 엄숙하게 授與하도록 함.

《代 案》

地方議會議員選舉區制 改善

- 地方議會議員選舉區制는 地方議員 定數縮小와 有給制가 도입될 경우 현행 小選舉區制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選舉의 過熱을 防止하고 小地域對決 현상을 완화하며, 死票를 줄일 수 있도록
 - 市·道議會議員選舉는 自治區·市·郡單位 中選舉區制로
 - 自治區·市·郡議會議員選舉는 自治區·市·郡單位 大選舉區制로하는 方案을 제시하며
- 투표는 市·道議會議員選舉는 1人 1票 記票방식, 自治區·市·郡議會議員選舉는 自治區·市·郡別 議員定數의 2分의 1에 해당하는 數만큼의 候補者에게 記票하는 방식으로 하며
- 當選人은 投票所에서 候補者別로 開票하고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최종집계하여 多數得票順으로 決定하고, 闕員時에는 豫備候補者가 承繼하도록 함.

② 政治資金에 關한法律

1. 政治資金의 安定的 · 均衡的 調達

가. 法人의 政治資金 義務的 寄託

- 政治資金의 안정적 調達을 위하여 政治資金을 寄附할 수 있는 法人中 3億원 이상의 法人稅를 납부하는 法人은 納付稅額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義務的으로, 3億원 미만의 法人稅를 납부하는 법인은 納付稅額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임의로 政治資金을 選舉管理委員會에 寄託하도록 함.
- 企業의 이중적인 政治資金 부담의 解消를 위하여 모든 法人은 後援會 會員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寄託金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政治資金을 寄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政治資金을 주거나 받은 者에 대하여는 公務擔任權을 제한하는 등 嚴格하게 規制하도록 함.

(1) 寄託方法

- 法人은 政黨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寄託하거나, 政黨을 지정하여 寄託할 수 있도록 하되,

- 하나의 政黨만을 지정하면서 配分比率을 정하거나, 둘 이상의 政黨을 지정하면서 일부 政黨만의 配分比率을 정하는 경우에는 配分比率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2) 配分 · 지급

- 政黨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寄託한 寄託金總額의 100分의 50은 國會議席數 比率에 따라, 그 殘餘分은 최근 실시한 國會議員總選舉의 得票數 比率에 따라 해당 政黨에 配分 · 지급함.
- 하나의 政黨을 지정하여 寄託한 경우에는 寄託金 總額의 100分의 70을 지정 政黨에 지급하고, 그 殘餘分은 지정 政黨을 제외한 政黨에 ‘政黨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寄託한 경우’의 예에 따라 配分 · 지급함.
- 둘 이상의 政黨을 지정하여 寄託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配分 · 지급함.

첫째, 寄託者가 配分比率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된 政黨에 ‘政黨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寄託한 경우’의 예에 따라 配分 · 지급하며,

둘째, 寄託者가 配分比率을 정한 때에는 그 比率에 따라 지급하되, 하나의 政黨에 100分의 70을 초과하여 配分比率을

정한 때에는 配分比率을 초과하여 지정한 政黨에 100分의 70만을 配分·지급하고, 초과된 比率은 나머지 지정 政黨의 配分比率에 따라 配分·지급함.

- 寄託金을 지급받은 政黨은 지급받은 寄託金總額의 100分의 50이상을 地區黨 및 所屬國會議員에게 지급하도록 함.

나. 信用카드를 이용한 政治資金 調達

後援會가 政治資金을 寄附할 수 있는 자에게 신용카드사와 提携한 寄附金신용카드(법인카드는 제외함)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률을 後援金品으로 寄附받을 수 있도록 함.

2. 政治資金 收入·支出에 대한 透明性 確保

가. 政治資金管理人을 통한 政治資金 수입·지출의 一元化

- 大統領選舉, 國會議員選舉(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현직 國會議員은 제외함),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의 立候補豫定者는 選舉管理委員會에 政治資金管理人을 申告하도록 하고, 동 立候補豫定者의 모든 政治資金(立候補豫定者 본인 資產 포함)의 收入·支出을 관리하도록 함.

- 公職選舉候補者의 政治資金 收入·支出에 관한 透明性이 확보될 수 있도록 大統領選舉의 立候補豫定者는 選舉日前 1年부터 選舉日까지, 國會議員·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의 立候補豫定者는 選舉日前 120일부터 選舉日까지 모든 政治資金의 收入·支出을 政治資金管理人이 選舉管理委員會에 申告된 預金計座를 通해서만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處罰하도록 함.
- 政治資金管理人은 選任·申告된 때부터 選舉日까지의 政治資金의 收入과 支出內譯을 選舉日후 30日(大統領選舉의 경우 40日) 까지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보고토록 하고, 보고를 받은 選舉管理委員會는 그 收入·支出에 관한 内譯을 公開하도록 함.

나. 政治資金의 收入·支出시 預金計座·手票사용 義務化

- 모든 政治資金의 收入과 支出은 選舉管理委員會에 미리 申告한 預金計座를 通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會計責任者 또는 政治資金管理人이 아니면 政治資金을 受領하거나 支出할 수 없도록 하며,
- 100萬원을 초과하는 政治資金을 寄附하는 때에는 手票사용을 義務化하여 政治資金 收入의 透明性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3. 公職選舉 立候補豫定者의 選舉關聯費用 募金許容

大統領·國會議員·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의 立候補豫定者(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현직 國會議員은 제외함)는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申告한 政治資金管理人을 통하여 政治活動에 소요되는 費用(立候補準備를 위한 費用, 당내경선費用, 選舉運動準備 및 選舉運動費用, 輿論調查費用, 기타 選舉關聯費用 등)을 다음의 한도액 범위안에서 募金할 수 있도록 함.

- 大統領選舉의 立候補豫定者는 최근에 실시한 大統領選舉費用制限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의 立候補豫定者는 최근 실시한 당해 選舉의 選舉費用制限額

4. 國庫補助金 및 會計報告 改善

가. 同時地方選舉 國庫補助金의 합리적 調整

同時地方選舉의 경우에도 하나의 選舉를 실시하는 때와 동일한 금액의 國庫補助金을 지급하도록 함.

나. 國庫補助金의 지급중단 및 減額에 관한 規定 新設

大統領令으로 規定되어 있는 補助金의 지급중단 및 減額에 관한 사항을 補完하여 法으로 정하도록 함.

- 補助金을 지급받은 政黨이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허위보고한 금액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을 回收하고, 回收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政黨에 지급할 補助金에서 減額함.
- 補助金을 지급받은 政黨이 會計報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中央黨의 경우 지급한 補助金의 100分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市·道支部 및 地區黨의 경우 中央黨으로부터 지원받은 補助金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을 減額함.

다. 會計報告 證憑書類 寫本교부

- 國庫補助金을 지급받는 政黨의 中央黨은 國庫補助金 收入·支出과 관련한 支出證憑書類를 年 4回(매분기 1회) 제출하도록 하고,
- 會計報告 閱覽期間중 政黨·後援會 등이 제출한 政治資金支
出證憑書類의 寫本을 교부하도록 함.

라. 政治資金 代理受領者の 引繼·引受 義務 등

- 會計責任者 또는 政治資金管理인이 아닌 者가 政治資金을 받은 경우 寄附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政黨 또는 後援會의 會計責任者에게 당해 寄附金과 寄附者의 인적사항 등을 引繼하도록 함.

- 後援會 등의 代表者 또는 會計責任者가 변경된 경우 會計帳簿, 預金通帳, 領收證 등 會計報告와 관련한 각종서류 등을 後任者에게 引繼하도록 함.

5. 法의 實效性 確保를 위한 罰則規定 신설

가. 政治資金에 關한法律 違反者에 대한 公務擔任權 제한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여 政治資金을 주거나 받은 罪등으로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을宣告받은 者는 5年간, 懲役刑의宣告를 받은 者는 10年간 公務擔任權을 제한하도록 함.

나. 罰則規定 新設

政治資金에 關한法律의 制限・禁止規定에 대한 實效性이 확보되도록 罰則規定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罰則을 신설하도록 함.

- 後援會 會員이 될 수 없는 者로서 後援會 會員이 된 者
(法 第5條第3項)
- 政治資金을 寄附 받지 아니하고 政治資金領收證을 발행한 者
(法 第7條)
- 解散한 後援會가 解散한 날부터 14日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定額領收證을 반납하지 아니한 者(法 第7條第6項)

③ 政黨法

1. 黨內 意思決定의 民主化

가. 黨員의 總意를 反映할 수 있는 代議機關의 構成

代議機關 構成의 民主性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政黨의 中央黨과 黨支部의 代議機關 構成員의 5分의 3이상은 下級黨部의 黨員總會 또는 그 代議機關에서 선출된 者로 構成하도록 함.

나. 民主的 節次에 의한 公職選舉候補者 및 代表者 選出

- 政黨의 公職選舉候補者 및 中央黨 · 黨支部 代表者의 選出에 있어 立候補豫定者가 선출하여야 할 定數를 초과하는 때에는 當該 당부의 黨員總會 또는 그 代議機關에서 秘密投票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되, 當該 당부가 없는 경우 上級黨部의 대의기관 또는 그 受任機關에서 비밀투표로 정하도록 함.
- 秘密投票에 의하여 選出하지 아니하면 公職選舉의 候補者로 등록할 수 없고 中央黨 · 黨支部의 代表者가 될 수 없도록 함.
- 公職選舉候補者 및 代表者 選出에 대한 立候補資格, 選出方法 및 상급당부 등의 異議提起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黨憲으로 정하도록 함.

다. 地區黨의 共同代表制 도입

地區黨의 私組織化를 방지하고 지구당 運營의 民主性 提高를 위하여 國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그 選舉의 候補者로 선출된 者는 地區黨의 代表者가 될 수 없도록 하며 地區黨에는 3인이상의 共同代表者를 두도록 함.

라. 黨內競選時 買收行爲 禁止

政黨의 黨內競選이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政黨의 公職選舉候補者 및 代表者 등의 黨內競選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公職選舉候補者나 代表者 등으로 當選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舉權을 가진 黨員 또는 그 配偶者나 直系 尊·卑屬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金錢·物品·飲食物 기타 財產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마. 黨費의 代理納付 禁止

黨費納付制度의 實效性을 확보하고 黨內競選의 公正性을 담보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他人의 黨費를 負擔할 수 없도록 하고, 他人의 黨費를 부담한 者와 타인과 通謀하여 자신의 黨費를 負擔하게 한 者는 黨費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年간 당해 政黨의 黨員으로서의 資格이 停止되도록 함.

2. 政黨의 政策推進內容 公開

政黨의 政策開發機能의 活性化를 위하여 政黨의 定期報告時 中央黨은 當該 年度의 政策推進內容(그 推進結果를 포함한다)과 다음 年度의 主要政策推進計劃을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이를 公開함으로써 政黨의 政策開發活動을 強化하도록 함.

3. 政黨構造의 改善 및 黨員資格 範圍擴大

- 地區黨은 國會議員地域選舉區單位로 두되, 하나의 區・市・郡 안에 2이상의 國會議員地域選舉區가 있는 경우에는 區・市・郡單位로 地區黨을 두도록 함.
- 政黨의 組織構造를 改善함으로써 運營經費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設置와 運營에 많은 費用이 소요되고 政黨活動보다는 選舉運動機構로 활용되고 있는 邑・面・洞 黨連絡所는 矢止하도록 함.
- 政治的 活動의 自由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國家公務員法 및 地方公務員法上 政治活動이 허용된 公務員에게 政黨의 發起人 및 黨員資格을 부여하도록 함.